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362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규정하고(안 제62조제2항),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동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진료비용의 감면 범위(안 제64조제1항) 및 약제비용의 부담 범위(안 제64조의2)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시설에”를 각각 “의료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및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의료시설”을 각각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제63조의 제목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을 “(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보훈병원”을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의료시설”을 각각 “의료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은”을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장은”을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의료시설(보훈병원)”을 “의료기관(보훈병원 및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중 “보훈병원”을 각각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제62조(진료)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입원진료	2. -----
<u>의료시설에</u>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u>의료기관에</u> ----- --
3. 통원진료	3. -----
<u>의료시설에</u>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u>의료기관에</u> ----- ----- --
<u><신 설></u>	② <u>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u>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50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

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③ -----

----- 의료기관-----
-----.

④ -----

-- 의료기관-----

-----.

제63조(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

----- 보훈병원, 제62조 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
--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
-----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
----- 의

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②·③ (생략)

④ 보훈병원의 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轉院)시킬 수 있다.

⑤ (생략)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제2항

료기관-----.

----- 의료기관-----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장 또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은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

-----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

관의 장은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①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feature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s. These lines are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by providing a guide for the height and placement of their writing. The background is white, and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cross the entire page.

1. -----

----- 의료기

관(보훈병원 및 공공단체의료

기관)-----

-----.

2. _____

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해당 목에 따라 부담 또는 지급 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u>보훈병원</u> 및 법 제42조의2 에 따른 의료기관: 감면비 율(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같은 비율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금액 을 부담 나. (생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 족으로서 법 제42조제5항제2 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 람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u>보훈병원</u>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감면비율에 따른 금액을 부담 ②·③ (생략)	----- ----- 가. ----- <u>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 관</u> ----- ----- ----- ----- 나. (현행과 같음) 3. ----- ----- ----- <u>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재활과	
연 락 처	(044) 202 - 5693